

병에 대한 징계의 양정 기준 (제2조제1호나목 관련)

비행의 정도 및 과실		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		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 이거나,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고의가 있는 경우		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경과실 이거나,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중과실인 경우		비행의 정도 가 가볍고 경 과실인 경우	
		비행의 유형							
1. 성실 의무 위반	가. 직무태만	강등 ~ 영창		영창		휴가제한		근신	
	나. 그 밖의 비행사실	강등 ~ 영창		휴가제한		휴가제한		근신	
2. 복종의무 위반		강등		영창 ~ 휴가제한		휴가제한 ~ 근신		근신	
3. 근무지 이탈금지 의무 위반		강등 ~ 영창		영창 ~ 휴가제한		휴가제한		근신	
4. 공정의무 위반		강등 ~ 영창		영창 ~ 휴가제한		휴가제한 ~ 근신		근신	
5. 비밀엄수의무 위반		강등 ~ 영창		영창 ~ 휴가제한		휴가제한		근신	
6. 청렴의무 위반		강등		영창		휴가제한		근신	
7. 집단행위금지 의무 위반		강등		강등 ~ 영창		영창 ~ 휴가제한		근신	
8. 품위 유지 의무 위반	가. 성희롱, 성폭력	비행의 정도가 중한 경우				비행의 정도가 가벼운 경우			
		강등 ~ 영창				휴가제한 ~ 근신			
	나. 그 밖의 비행사실	강등 ~ 영창		영창 ~ 휴가제한		휴가제한 ~ 근신		근신	

※ 비 고

1. "성희롱"이란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.
2. "성폭력"이란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.